석면해체 • 제거작업 감리지침

2018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고려대학교 노영만
- 제·개정 경과
- 201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SHA Asbestos Construction Standard 29 CFR 1926.1101
- OSHA Asbestos Shipyard Standard 29 CFR 1915.1001
- OSHA General Industry Standard 29 CFR 1910.1001
- EPA Asbestos-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,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(AHERA) -(40 CFR 763 Subparte E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(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준의 준수)
-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(석면 제조·사용 작업 및 해체·제거 작업의 조치기준)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
-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)
-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89호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8년 12월 1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 38조의3 석면해체·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·체거작업 감리시 감리인의 현장적응성을 높이고, 감리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『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지침』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시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인에게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"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나) "발주자"란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 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.
 - (다)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
 - (라) "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"이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30조제1항 따른 석면해 체·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감리인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다.

4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감리의 업무범위

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의 업무범위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-89호)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.

- 4.1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
 - (1)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세 제곱센티미터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 해체·제거업자에게 아래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(석면안전관리법」제30조의2).
 - (가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시정(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(나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중지(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다)
 - (다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(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(2)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작업의 중지, 시정, 설비의 철 거 또는 해체중지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제4항).
- 4.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
 - (1) 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-51호)에 의거 측정한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.01개 이하가 되도록 석면해체·제거 후 작업을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증명자료가 해당 지방관서로 제출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(2)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리인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해당 건축물이나 해체·제거작업을 위한 설비 등을 철거하거나 해 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4.3. 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·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
- 4.3.1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 제출 및 관리에 대한 확인
 - (1) 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여부와,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 자,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4.3.2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

발주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감리인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 현장에 도착 시 가장 우선 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절성 부분인데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
- (1)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와 대상사업장의 일치
- (2)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신고증명서
- (3) 발주처와의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공사계약서
- (4) 석면해체 제거작업 면적이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인 배치기준에 적합
- (5)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
- (6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공사일정과 투입인력의 적절성
- (7) 계획서에 기재된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 일치
- (8) 투입인력의 작업역할에 대한 배분
- (9) 투입인력의 사고 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인력 포함
- (10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 필요한 장비 확보
- 4.3.3 석면조사보고서의 적절성 확인

H - 199 - 2018

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조사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(1) 석면조사보고서와 대상 사업장과의 일치
- (2) 제거되어야 할 석면함유자재의 종류와 면적
- (3) 석면지도와 실제 대상건물에서 석면함유물질의 일치
- (4) 석면조사보고서의 현장사진과 실제 대상건물의 일치
- (5) 석면조사보고서에 기재한 석면조사기관의 고용노동부허가
- (6) 석면조사보고서에서 기재된 석면해체·제거면적과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에 기재된 면적과의 일치

4.3.4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

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4.3.4.1 석면해체ㆍ제거 준비작업 시 조치사항

- (1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장의 경고표지의 설치
- (2)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안내표지 설치
- (3)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
- (4)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
- (5) 위생설비의 설치 및 적절성
- (6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시 금지사항(흡연, 취식등)의 주지
- (7)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 밀폐 및 격리
- (8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
- (9) 작업지역 내 이동 가능한 시설물은 밖으로 이동, 이동불가능 시설물은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
- (10) 실내작업장소는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을 0.15 mm 이상, 벽은 0.08 mm이 상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으로 밀폐
- (11)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실내작업장과 외부와의 압력차를 $-0.508 \text{ mmH}_2\text{O보다}$ 크게 유지
- (12)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내작업장의 환기횟수를 시간당 4회 이상으로 유지

H - 199 - 2018

- (13) 4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음압기 대수 산정 및 확보
- (14) 음압기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위생설비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전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
- (15)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측정부분은 음압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,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
- (16) 음압기는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가동
- (17) 음압기록장치는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
- (18) 음압기에 고성능필터가 장착
- (19)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필히 습식
- (20) 습식에 따른 감전예방위해 전기는 외부전기를 이용하는 임시 배전판을 사용
- (21)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작업장 내외부에 비계설치

4.3.4.2 석면해체 • 제거 작업 종류별 조치사항

- (1)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제거작업
- (가) 작업근로자에게 특급 성능 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마스크, 전동 식 특급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
- (나)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·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
- (2)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ㆍ제거작업
 - (가)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을 고속 절삭디스크 톱, 도 끼,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 내는 작업을 할 경우 음압밀폐시스템 설치
 - (나)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 를 지급, 착용
 - (다)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, 착용
 - (라) 석면함유 벽체, 바닥타일,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
 - (마)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, 연마,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
- (3) 석면이 핚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

- (가) 지붕재를 직접 절단,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
- (나)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
- (다)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 를 지급, 착용
- (라)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, 착용
- (마) 지붕재 해체·제거작업 시 내부의 바닥과 외부(처마밑)를 0.15mm이상의 폴리에틸 린 시트로 이중으로 덮음
- (4)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제거작업
 - (가) 해체 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
 - (나)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·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·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의 분무
 - (다)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
 - (라)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을 직접 절단,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
- (마)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 를 지급, 착용
- (바)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, 착용
- (5)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분사한 물이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
- (6)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~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

4.3.4.3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종료후 조치사항

- (1) 석면폐기물은 건조되지 않도록 습윤 유지하면서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- (2) 바닥시트,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·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 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

H - 199 - 2018

- (3) 석면함유물질 제거 후 작업지역은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 소기로 청소
- (4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 후 사다리,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 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
- (5)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
- (6) 음압기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실시하고 고성능필터가 교체되었는지 확인
- (7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위해 밀폐,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 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며 재사용 금지
- (8) 폐기처리용 용기는 0.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
- (9)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.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
- (10)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석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지 확인
- (11) 바닥, 벽, 에어컨 공기통풍구 등에 존재하는 석면잔재물을 제거

4.3.5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

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 방법 외에 다음과 같이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적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- (1)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에 대한 교육
- (2)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
- (3)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장에서 흡연 및 취식 금지 교육
- (4)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
- (5)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
- (6)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
- (7)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사용되는 공구 및 장치의 사용법 교육
- (8) 근로자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
- (9) 석면해체·제거작업장 내부에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교육
- (10) 지붕재 제거작업 시 추락예방 안전조치
- (11) 석면 등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

H - 199 - 2018

- (12)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
- (13) 비상시 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
- 4.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

4.4.1 개선계획이 적용될 시기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체제거 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는지를 감리인은 확인하여야 한다.

- (1)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
- (2) 석면해체·제거업체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
- (3)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(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)
- (4)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(측정 지점,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)
- (5)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"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

4.4.2 개선계획서에서 감리인이 검토 및 자문하여야 할 사항

- (1) 석면해체·제거업체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재확인
- (2) 석면비산방지 계획서의 검토 및 의견 자문
- (3)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계획서의 검토 및 의견 자문
- (4) 기타 관련사항의 검토

4.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노출 방지 대책 검토 확인

- (1) 감리인은 작업이 시행된 날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(측정결과)를 그 다음날 작업전에 확인하여 허용기준 초과시, 작업을 중지시키고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같이 석면이 외부로 배출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.
- (2) 석면이 외부로 배출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, 바닥,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로 밀폐된 부분을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(3) 밀폐된 실내의 음압이 $-0.508 \text{ mmH}_2\text{O보다}$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에 충분히 습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시에도 습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제거된 석면자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4.6 해당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 법령, 규정 준수여부 관리

감리인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자가 석면해체·제거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 령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<표 1>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규정

항목	내용	관련규정
고용노동부 등록	· 석면해체 · 제거업의 등록	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
석면해체 • 제거	·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	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
작업의 계획서	·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	규칙 제489조
작성	· 근로자 보호조치	4 4095
석면해체 • 제거	·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신고절차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작업의 신고		제80조의 8
석면해체·제거 작업의 준비	· 경고표지의 설치	
	·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	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
	· 출입의 금지	
	· 흡연 등의 금지	규칙 제490조-제494조
	·위생설비의 설치	
석면해체·제거 작업 방법	·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시의 조치	
	·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
	·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	규칙 제495조-제497의 3
	· 석면함유폐기물의 처리작업 시 조치	
석면배출허용기 준 준수	· 사업장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	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
	· 석면해체 ·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	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
	정도 측정	제38조
석면농도기준의 준수	· 석면농도기준의 준수	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
	·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완료후의 석면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	농도기준	제80조의10
석면폐기물 처리	· 배출된 석면의 폐기물의 적합한 처리	폐기물관리법 제13조
		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
		2항
	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
		 14조

5.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시 감리인의 역할

5.1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종류

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·설비(뿜 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) 등의 해체·제거 시 발생되는 것
- (2)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·절단·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·절단·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
- (3)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(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)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

5.2.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수집, 보관, 처리시 감리인의 역할

감리인은 폐석면 지정폐기물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집, 보관, 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사업주는 석면 해체·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환경부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(2) 폐석면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,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. 한편,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.
- (3)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 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를 하고,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(뿜칠로 사용된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 시트), 방진마스크,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이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한다(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).